#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33 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선교·박덕흠

강기윤 · 조태용 · 태영호

구자근 · 엄태영 · 추경호

김성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함)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.

그런데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 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,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.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
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10조의2 신설).

#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 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 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기관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 공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출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실적분

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·② (생 략)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| <삭 제>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 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 <신 설> 제10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 서 제공 등)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 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 여야 한다. ② 공공기관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종합 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